"얘기 좀 할게"에 자리 뜬 경찰→2차 폭행…1심 "국가도 배상"

가해자들 요청에 경찰들 현장 이탈
2차폭행 발생해 전치7주 상해 입어
법원 "국가도 일부 배상해야" 판단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2차 폭행이 발생,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C씨, D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C씨, D씨가 공동해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이 중 99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5월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A씨와 자신의 배우자 C씨가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해해 A씨의 얼굴을 수십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B씨의 지인인 D씨도 폭행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주점에 도착했는데, '잠시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B씨 등의 요청을 받고 건물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뜨려 하자 B씨 등은 그를 가로막고 다시 폭행했고, A씨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의 골절상을 입어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B씨, C씨, D씨는 이 사건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벌금 1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9월 이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등은 물론 국가도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 등은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수시로 A씨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등 2차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고,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B씨 등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당시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경찰관들도 이를 업무상 실수라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경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A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의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B씨 등과 같은 책임을 국가에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해 99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명했다.

최이슬 기자

떨리는 마음으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명륜당에서 열린 '2023신방례(新榜禮)'에서 신입생들이 유교 성현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알묘(謁廟)를 연습하고 있다.

法 "진도군, 환경 평가 없이 돈사 건축 불허 위법"

진도군민,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1심 패소 2심 승소

진도군이 실질적인 환경 평가 없이 준보전 산지의 돈사 건축을 불허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을 받았다.

진도군이 돈사 건축이 산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산림보호법과 옛 산지관리법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준보전 산지에 돈사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진도군은 2020년 3월 돈사 건립을 불허했다. 산림보호법과 옛 산지관리법(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검토한 결과 돈사 조성이 산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재량권을 인정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도군이 준보전 산지에는 옛 산지관리법(산림의 경영·관리·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면 산지 전용 안 됨)을 적용할 수 없는데 법을 어기고 돈사 건립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도군이 사업 계획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산지관리법령의 검토 사항 아님)을 산지 전용 불허가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돈사 건립 시 발생하는 악취·폐수 등으로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인접 산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도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돈사 건축 신청지는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분리돼 하단부에 있다.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에 돈사 건물이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도군은 산림 보호 악영향에 대한 근거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추상적인 우려를 돈사 건립 신청 불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 국유림관리소장 사실조회 결과 돈사 건립으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이 있다고 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고, 축사의 배설물·소독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 또는 유용·희귀 식물의 자생 환경에 대한 변화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A씨는 톱밥 발효 방식의 밀폐식 돈사 운영, 안개 분무 시설 설치 등의 환경 오염 방지 계획을 제시했다. A씨의 돈사 경영이 주변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 관리·기능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잠 안 잔다고…지적장애인들 감금·폭행한 복지사 벌금형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54)·B(38)씨에게 각 벌금 15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7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발길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같은 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5월 8일 시설 휴게실에서 다른 장애인에게 청소기를 들이밀거나 팔을 잡아 넘어뜨린 뒤 질질 끌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유나 기자